

위한 초석 부재로 당사자들이 관련 지식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지식 관리는 명확한 지침과 모니터링 방안 마련에 적잖은 기여를 할 뿐만 아니라 '문화와 발전을 통합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생성하여 현실과 목표를 모두 충족시키면서 효과 있게 이행할 수 있는' 역량 구축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다(MDG-F: 2013).

무형유산 NGO 공동체는 영향 평가 개선 및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 발굴과 함께 확실하면서도 이행 가능한 프로젝트 개발에 참여함으로써 이러한 노력을 활성화할 수 있다.

예술 단체, 기관, 문화유산의 관리 강화

유산 관리를 위한 연구와 역량 강화는 무형유산 NGO가 기여할 수 있는 또 다른 분야라 할 수 있다. 관련 지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문화 부문과 사회 및 경제 부문의 연계성에 관한 거시 차원의 연구가 필요하다. 무형유산 NGO는 이미 문화자원을 관리하고 창의 기업을 육성하는 예술가·공동체 기반의 조직 설립에 상당한 기여를 해 왔다. 연구·학술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무형유산 NGO는 학제 간 연구와 유능한 관리자 및 기관 육성을 지원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무형유산 NGO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촉매제로서 문화생활 참여 확장을 통해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길 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해야 한다(UCLG, 2013). 문화는 그동안의 발전 과정에서 '미숙련자' 또는 '고용에 기술이 부족한 자'로 꼬리표가 붙은 사람들을 창조경제의 일원으로 되도록 변화 발전의 기회를 창출하는 미시경제 차원의 개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무형유산 NGO는 지식, 경험, 자원, 공동체와의 긴밀한 관계 등을 바탕으로 문화권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두 다루는 실천 기반의 프로그램과 계획을 혁신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NGO의 이러한 노력은 지식 공유와 네트워킹에 효과를 미치는 주춧돌 구축으로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 무형유산의 지속 가능한 전승을 위한 NGO 역량 강화

함한희

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교수

한국 무형유산 보호 관련 NGO 참여 배경

유네스코는 2003년 협약에서 국가·국제 차원에서 무형유산의 보호 노력을 더욱 적극 전개하기 위해 비정부기구(NGO)의 참여를 장려하고 있다. 즉 협약 본문에서 규정한 대로 국가 차원에서 무형유산 파악과 규정에서 NGO는 다른 이해 관계자들과 함께 정부 기관을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¹

이와 함께 위원회는 유네스코의 인가를 받은 NGO(인가NGO)가 국제 협약 이행 과정에서 지원과 조언, 무형유산 정보 수집 등 지원의 수행 방법에 관한 구상안을 제시했다.² 이러한 운영지침의 방침에 따라 한국 정부는 무형유산을 파악하고 규정 과

1 협약 본문 11조: 모든 당사국은 (b) 제2조 제3항에 언급된 보호 조치 중 자국의 영역 내에 존재하는 무형유산의 다양성 요소를 공동체, 집단 및 관련 비정부기구의 참여 하에 확인하고 규정한다. 제11조 b항에서 명시한 NGO의 역할은 운영지침 III2장, 90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운영지침 III.2장 96조: 협약 제9.1조에 따라 위원회에 자문 기능을 수행할 인가받은 비정부기구는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내용을 평가하고 참고를 위해 검토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a) 긴급보호목록 등재 신청서 (b) 협약 제18조에서 언급한 프로그램, 프로젝트 및 활동 (c) 국제원조 요청 (d) 긴급보호목록에 등재된 유산 보호 계획의 효과. 운영지침 123조 b항: 위원회의 무형유산의 인식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유네스코 사무국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공동체, 단체, 시민사회, 비정부기관, 전문 센터, 연구소, 무형유산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관심이 있는 기타 기관들 간의 정보 교환을 촉진한다.

정에서 NGO가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는 지원책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NGO도 무형유산 보전계획 이행과 관련해 정부와 '공동체, 단체 및 개인'³ 지원에 적극 임하는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인가NGO 두 곳을 포함해 국내의 NGO 현황을 살펴보고 NGO의 권한 부여와 관련한 잠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인가NGO 두 곳을 비롯해 고성오광대놀이, 무형유산지기와 관련된 두 NGO를 살펴보았다. 이들의 활동은 한국의 무형유산 보호 및 전승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에는 무형유산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수많은 NGO가 있지만 협약에 의거해 국제 활동을 인정받은 NGO 단체는 국제무형문화도시연합(ICCN), 한국문화재보호재단(CHF), 세계무술연맹(WoMau) 등 세 곳에 불과하다.

한국 ICH와 관련한 NGO 주요 활동

국제무형문화도시연합(ICCN)

2008년에 수립된 ICCN은 무형유산 보호와 관련해 활동 중심 정책에 주력하고 있다. ICCN은 알제리, 캄보디아, 캐나다, 체코, 이집트, 프랑스, 그리스, 헝가리, 이스라엘, 이탈리아, 자메이카, 뉴질랜드,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미국 등 국가의 지방정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회원국은 2004년 강릉선언의 구상에 따라 무형유산 보호를 위해 시장 및 지방정부에서 국제 협력을 위한 플랫폼으로 ICCN을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ICCN은 회원국 간에 정기회의, 보호 활동에 관한 모임 및 정보 공유와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정부 공무원들을 포함해 전문가 및 관리인 교육 등 내용을 골자로 한 활동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한국문화재보호재단(CHF)

CHF는 정부의 문화재 보전과 진흥을 지원할 목적으로 1980년에 설립되었다. CHF는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정기 모니터링 프로젝트, 인간문화재의 연례 공연축제,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등이

³ 협약에서 사용한 문구에 따르면 '공동체, 단체 및 개인'은 무형유산 실행, 전승, 활성화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이해 관계자를 말한다.

있다. 문화재보호재단의 활동이나 관심은 정부가 등재한 무형유산에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재단은 관광 부문에 적극 참여해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국내는 물론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다.

고성오광대보존회(GMDPO)

경남 고성 지역 주민들은 일찍이 탈춤 전승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56년에 고성오광대보존회를 설립했다. 마을 공동체는 매년 정월 대보름에 탈춤공연을 하고 있다. 고성오광대는 5개 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과정은 신명 나는 민간 설화와 음악 및 춤으로 가득하다. 공연예술로서 큰 인기와 명성을 얻고 1964년에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고성오광대보존회는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NGO의 한 곳이다.

무형유산지기(ICHKO)

현재 한국에는 무형유산지기로 활동하는 회원이 64명이다. 2013년에 문화재청이 무형유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시민들로 구성되는 새로운 조직을 선보였다. 무형유산지기는 유네스코 협약에 담긴 정신을 실천하는 자원봉사자 단체로 태어났다. ICHKO의 목표는 각 지방에 흩어져 있는 무형유산 종목을 파악하여 기록하고, 나아가 보호 방안을 위한 실효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무형유산지기 회원들은 워크숍과 지역회의를 정기 개최하고 있다.

기관명	ICCN	CHF	GMDPO	ICHKO
창립 연도 (인가)	2008 (2012)	1980 (2010)	1956	2013
주요 무형유산 종목	민속 의례 및 축제	등재된 모든 문화재	오광대	무형유산 전체
무형유산 관련 주요 활동	보호를 위한 활동 중심 정책	증진, 교육, 관광	보호 및 전승	무형유산 파악 및 기록
핵심 구성원	시장, 공무원, 시민	전문가, 시민, 문화재 보유자	오광대 연행자, 주민, 전문가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자원봉사자
참조	www.iccn.or.kr	www.chf.or.kr	www.gwangdae.or.kr	www.ichpedia.org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 차원의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계획이 있음 정부 의존도가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극 활동 잘 구축된 네트워크 정부 의존도가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확실한 정체성 민속 문화 증진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생 단체 집단 활동이 필요 네트워크 강화가 필요

국내 NGO들은 사라질 위협에 처한 무형유산의 전승과 보전에 힘을 쏟고 있다. GMDPO의 사례에서 본 것과 같이 일부 NGO는 무형유산 공동체 구성원들이 설립하고, 해당 종목의 전승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CHF와 ICCN과 같은 조직들은 무형유산 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와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 정부 지원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ICHKO는 무형유산 공동체, 단체 및 개인 보유자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ICHKO는 구성원이 거주하는 지역이나 그 주변에 소재한 무형유산을 발굴하고, 기록 및 모니터링을 하는 등 많은 역할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이들 NGO의 활동이나 목표를 간략히 살펴본 가운데 이들 조직은 모두 협약 지침에 따라 무형유산 보호 활동 관련 효율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NGO는 조직체로서 생존력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의 역량 강화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 절에서 다루고자 한다.

NGO의 역량 강화

역량 강화의 개념

역량 강화(empowerment)라는 용어는 성 인지, 개발, 교육, 환경, 공동체 연구 등 여러 학문 분야와 영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최근 유엔개발계획(UNDP)에서도 이 용어를 사용하여 '역량이 강화된 삶, 회복력 강한 국가(Empowered lives. Resilient nations)'라는 슬로건을 만들었다. 그럼에도 많은 학자가 이 개념이 명확하게 규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다.

역량 강화는 아주 느슨하게 정의되어 있어서 특정 분야에 들어맞는 개념을 명확하게 재규정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발표자는 무형유산 분야에서 NGO 역량 강화 관련 운영상의 개념을 더욱 명확히 하고자 할 때 일반 개념을 채택하고자 한다.

역량 강화의 가장 일반화된 정의는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개인, 사회, 경제, 정치 간에 작용하는 힘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통제력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의 능력'을 말한다(Israel et al., 1994, Kasmel 2011 재인용). 먼저 사회·경제·정치·법률 측면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역량 강화는 다차원 개념이라는 사실을 시사한다. 또한 개인, 단체, 공동체 등 여러 단계에서 발생한다. 두 번째로는

개인이나 공동체가 권한을 부여받아 자신들의 생활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통제력과 효율성 및 사회 정의를 얻기 위해 실제 활동할 수 있는 과정을 말한다(Czuba, 1999, Israel et al., 1994 Kasmel 2011 재인용). 요약하면 NGO의 역량 강화는 자신들의 활동에 대한 통제력을 부여받는 다차원 성격의 사회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NGO 역량 강화를 위한 방법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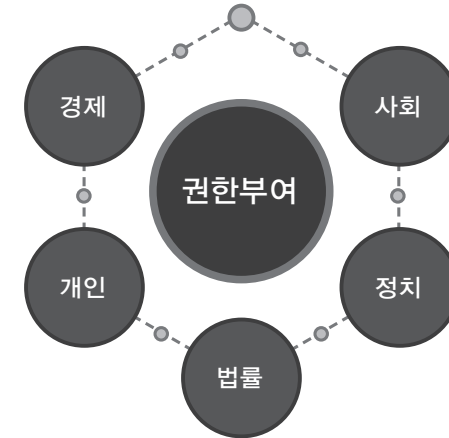


그림 1. 역량 강화의 다차원 측면

가. 정체성 증대

NGO의 정체성은 개별과 집단 모두 적용되는 태도 형성 과정을 거치면서 강화되어야 한다. 정체성 형성은 내부 협력 강화에 중요하다. 새로운 가치를 내재화시키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행동을 끌어내는 핵심으로 간주된다.

이 단계에서 역량 강화는 심리 과정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활동이나 조직 구조 상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각각의 구성원은 심리상으로 역량 강화를 받았다고 느끼도록 훈련하고 교육을 받아서 정부와 무형유산 공동체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의 협력 관계에서 더욱 자신감 있게 맡은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된다.

나. 왕성한 헌신

NGO는 무형유산을 파악하고 규정하는 일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이러한 상향식 접근법은 국가 차원의 종합 무형유산 목록 작

성에 필수다. 무형유산의 보호 방법 가운데 목록 작성은 무형유산 공동체 구성원이 자신들의 무형유산에 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방안이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무형유산을 목록으로 작성하는 과정은 무형유산 전승자와 공동체의 자아 존중심을 증대시킨다. 또한 인류의 창의력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중시된다. 협약은 각자의 영토 안에 존재하는 무형유산의 목록 작성은 물론 정기 갱신 작업에 정부, NGO, 전문가, 기타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를 장려하고 있다.(제12조)

다. 네트워크 형성

NGO의 관계망을 구축해서 그동안 정부가 소홀히 취급해 온 민속 문화에 기반을 둔 중요한 무형유산 보호를 위해 NGO의 힘을 모을 수 있다. 1960년 이후 한국 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문화재 보호 및 보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⁴ 국보 등 유·무형 문화재를 모두 보호하기 위한 법·행정 조치를 시행해 왔다.

한국 정부의 이러한 문화재 보호 노력은 모범 사례로 인정받아 국제 관심의 대상이 된 것도 사실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무형유산 분야에서 유네스코가 실시하고 있는 계획안은 한국 입장에서 전혀 새로운 것도 아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보호 정책과 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유네스코 계획안은 오히려 한국 정부를 다소 당황하게 만들었다. 한국은 문화재 보전과 보호를 위해 특유의 체계를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기존의 제도를 수정해야 하는 입장에 서게 되었다.

보호 조치와 관련하여 한국의 현행 제도와 유네스코의 새로운 제도 사이에 놓인 상이한 측면은 신중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지방 소재의 미지정 무형유산에 초점을 맞춘 NGO가 다양한 무형유산 이해 관계자들과 함께 연구, 토론, 토의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의 참여와 도움은 두 제도 사이의 격차를 좁히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라. 체계화된 변화

이러한 여러 단계를 통해 NGO는 구성원의 태도, 기록화, 목록 작성에 적극 참여해 역량을 강화하고, 아래로부터(무형유산의 공동체, 단체, 개인) 위로(중앙 및 지방 정부와 유네스코) 진행되는 상향식 및 다면화된 연결망으로 변화를 꾀할 수 있다.

⁴ 1962년에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었다.



그림 2 역량 강화의 사회 과정

NGO 역량 강화를 위한 잠정 원칙

NGO 역량 강화의 잠정 원칙이란 NGO의 무형유산 보호 활동과 관련된 역량 강화 방침을 제공하기 위한 일련의 원칙을 말한다. 이를 위해 NGO 현황을 검토하고, 이들의 주요 활동에 대한 분석을 거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원칙에서는 상향식 전략과 지역 NGO의 선도 노력을 촉진하는 보호 활동이 강조된다. NGO의 다차원 측면과 무형유산의 지속 가능한 전승을 위한 NGO의 역할 강화를 고려하여 바람직한 실행을 위한 모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원칙 1: 높은 수준의 자존심을 확립한다.

원칙 2: 지역 무형유산(민속 문화 등)을 국가 및 세계 자산으로 신중히 고려한다.

원칙 3: 지역 지식을 존중하고 무형유산 보유자, 단체, 공동체와 긴밀한 관계를 구축한다.

원칙 4: 구성원이 무형유산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강화한다.

원칙 5: 무형유산의 광의 개념을 따른다.

원칙 6: 무형유산의 보전과 관련해 기타 이해 관계자들의 참여를 장려한다.

원칙 7: 다른 국가의 NGO와 연계망을 형성하여 국제 활동을 증대한다.

원칙 8: NGO 포럼, 자문단체 등 유네스코의 다양한 활동에 NGO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법제도 시행, 문화유산의 보전과 전승 행정 업무, 하향식 문화유산의 등재 신청 등 한국의 기존 무형유산 보호 정책은 중앙정부가 해 왔다. 그러나 2003년 협약은 무형유산을 파악하고 규정하는 과정에서 공동체, 단체, 개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당사국에 권고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무형유산 연행자, 무형유산 관련 입법 조력자, 전문가와 당사국 간 협력 관계에 있는 NGO 등 공동체·시민사회가 기록화 및 목록 작성 과정은 물론 기타

보호 조치 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해야만 한다.

맺음말

유네스코의 무형유산 협약이 선포된 이래 회원국, 등재 목록, 대표목록이 꾸준히 늘고 있다. 현재 위원회(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유네스코 산하 정부간위원회)는 2008년에 90개 종목(종전에 걸작으로 선언된 종목)을 포함시켰고, 2009년에는 76개 종목을 등재했다. 2010년에는 47개 종목이 추가되었다.

첫 번째 실행 주기(2009년 6월-2009년 11월)를 통해 당사국이 무형유산을 대표 목록에 등재하기 위해 열성을 다하는 입장이지만 긴급보호목록의 등재에는 관심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두 영역에서 나타난 등재 목록상 불균형은 해당 당사국 사이에서 경쟁 과열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단순히 목록에 등재하는 종목의 개수 늘리기에 집중하기보다는 협약 정신을 확산시키고 문화 다양성과 인류 창조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는 일이 중요하다.

역량이 강화된 NGO가 무형유산 공동체, 단체, 보유자들과 함께 손을 맞잡으면 무형유산 보호 정책이 추구하는 주요 정신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